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40
----------	-------

제출년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불부합한 일부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작은도서관 정의 구분
(안 제2조제1호가 및 나목)
-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조문, 정의 수정
(안 제2조제2호~제4호, 안 제3조)
- 조항 제목 및 인용 조례 수정 (안 제5조제2항, 안 제17조)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등록 취소 근거 신설
(안 제5조의2, 제5조의3)
- 안산시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 정비(안 제9조)
- 상위법령 불부합 등에 따른 조문 삭제
(안 제5조제3항, 안 제10조~제14조)

개정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붙임 4]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4. 3. 26. ~ 2024. 4. 15.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을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
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를 ““도서관자료”란”으로,
“시청각자료”를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로, “정보가 축적된 모
든 매체를”을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
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로 한
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안산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안산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의3(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자료” 를 “도서관자료” 로 한다.

제8조 중 “관계법령” 을 “법 제5조제2항” 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후단 중 “「안산시 포상조례」” 를 “「안산시 포상 조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중앙도서관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담당·팀장 직위·성명	독서행정팀장 김영란
자	담당자 성명·전화	김혜남 (행정 2709)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2.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p> <p>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 <p>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p>	<p>제2조(정의) ----- -----.</p> <p>1. ----- ----- ----- <u>말하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u></p> <p>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u>안산시</u>가 <u>구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u>을 말한다.</p> <p>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u>민법</u>」, 「<u>상법</u>」,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u>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u>으로서 「<u>도서관법</u>」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u>작은도서관</u>을 말한다.</p> <p>2. “운영자”란 「<u>도서관법</u>」 제36조제1항----- -----.</p> <p>3. ----- 「<u>도서관법</u>」 제4조제2항제1호----- -----.</p> <p>4. “<u>도서관자료</u>”란 ----- ----- ----- <u>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u></p>

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누구든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자료 -----
-----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마련-----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삭제>

제5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

<신 설>

제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 5. (생략)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생략)

<신 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국장

추어야 한다.

제5조의3(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

-----.

1. 도서관자료 -----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의 지원) --- 법 제5조제2항-----

--.

제9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 제>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삭 제>

<삭 제>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시작은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3. 작은도서관 조사,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5. 다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후원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포상) -----

----- 「안산시 포상 조례」
-----.